2021년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o 일 시: 2021. 9. 14.(화요일), 10:30
- o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- 심의위원: 홍지만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임형주 위원
-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
2. 전차(제2021-234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3. 안건상정분과위원장
〈 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•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
시정권고 심의
4. 폐회선언분과위원장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o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88건(안건번호 제2021-123190호~123977 호)
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123190호~1231945는 웹하드, ■■■ 카페 및 블로그에 만화,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 중 안건번호 제2021-1 23195호는 심의 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나머지 5개 안건은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123567호는 웹하드에 영상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.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외국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, 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,34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 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o 홍지만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234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E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B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 리하여 공개함.

2. 안건상정

- 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오진해 전문위원: (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)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,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. 금일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'○○○○○○○', '△○○○○', '□○○○', '□○○○', '□□□□', '□□□□', '□□□□', '★★★★', '□□□□□', '□□□', '□□□□', '□□□□', '□□', '□□',
 - 참석 위원 전원: 해당 없음.
 - 홍지만 분과위원장: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.
 - 오진해 전문위원: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8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.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.
 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23190호~12319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, ■■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,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 중 안건번호 제2021-123195호는 현재 삭제된 상태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E 위원: 안건번호 제2021-123195호는 현재 삭제가 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하며 나머지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B 위원 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123190호~123195호 중 제2021-123195호는 삭제 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안건번호 제2021-12356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영상 불법복제물로 웹하드에 영화 '◆◆◆◆◆◆◆◇'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 해당 영상 저작물은 국내에서는 2011. 6. 30. 개정 저 작권법 이전의 저작권보호기간인 50년이 적용되어 2012년으로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음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

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D 위원: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조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오진해 전문위원: 조사대상을 정할 때 박스오피스 순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, 이 때 재개봉 등으로 공유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. 심의에서 발견되어 보호기간 만료로 확인되는 경우 향후 모니터링에서는 제외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음.
- E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.
- B 위원 : 동의함. 부결 의견임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123567호는 외국저 작물의 보호기간 또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 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23196호~12397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프로그램, 게임, 출판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 - (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(영화 '[중점](영화)기동전사 건담: 섬광의 하사웨이 (2021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23325호 '[중점](영화)기동전사 건담: 섬광의 하사웨이 (2021)'는 2021. 6. 11. 개봉한 해외 영화로모바일 웹하드서 345포인트에 배포중임.

(영화 '(영화)귀여운 여인 (1990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 번호 제2021-123568호 '(영화)귀여운 여인 (1990)' 는 1990. 9. 15. 개 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,670포인트에 판매중임.

(방송 '[중점](방송)종이의 집(2017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 건번호 제2021-123728호 '[중점](방송)종이의 집(2017)'은 2017. 5. 2. ~ 2017. 6. 17 방영한 해외드라마로 웹하드에서 490포인트에 판매중임.
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,349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 시어 안건번호 제2021-123196호~1239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 람.
- B, E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123196호~12397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"안건번호 제2021-123190호~123194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-123195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1-123567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-123196호~12397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"

4. 폐회 선언

o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9. 28.

분과위원장 홍지만

위원 김민아

위원 임형주